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및 유관기관과 원청인 삼성전자(주), 삼성전자(주)의 하청(협력사)간 원·하청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및 상호 협력함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고용노동부 유관기관·삼성전자(주)·삼성전자(주) 협력사 (이하 "협약당사자") 상호 간 유기적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상생 협력 분위기를 증진하고, 하청(이하 "협력사")의 안전문화 확산,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노동현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협약당사자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협약내용) 협약당사자는 지역내 원·하청 상생 협력 분위기 확산과 협력사 대상 정부 지원 사업 연계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여 다음 각호의 협약내용을 이행한다.

1. 원·하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전파, 안전문화 확산,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협조
2.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고용노동부 제정, 2020.11.) 준수 노력
3. 일하는 방식의 혁신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이 필요한 협력사 발굴 및 정책홍보 등 협조
4. 협력사 채용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직업훈련 등 고용정책홍보 협조
5. 원·하청의 일하는 부모, 출산·육아 지원(육아지원 3법)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등 협조
6.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연계 협조

제4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등)

1. 협약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청렴·윤리·인권보호·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협약이행·교류·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이 협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협약내용 변경)

1. 본 협약서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거 변경한다.
2.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발효일 및 유효기간)

1. 본 협약은 각 당사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2. 본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년간 유효하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협약 당사자가 협약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 매 2년마다 같은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3.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8부 작성하고 협약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4월 9일



SAMSUNG
평택캠퍼스

SAMSUNG 협력사
(주)에스티 (주)메카로 한양전공(주)

이경환

[Handwritten Signature]

[Handwritten Signature]

[Handwritten Signature]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남부지사

김규환

최종덕

박정